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 및 한계에 대한 의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서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법률적 근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위치, 사진, 정치적 견해 등을 표출하는 것도 일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가 이를 2차적인 서비스 목적으로 이용한다거나 빅데이터 업체들이 시장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또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역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공개된 개인정보’에는 서로 다른 여러가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된 정보도 있을 것이고¹, 명함과 같이 정보주체가 특정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SNS와 같이 임의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가 공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각각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내의 규정과 법원의 해석, 해외의 입법례 등을 검토한 후,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 및 한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개된 개인정보 관련 국내 해석

1) 국내 법령

¹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에 이 논의에서는 배제한다. 즉, 이 글에서는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2017.7.26 시행)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20조에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지 의무 등을 다루고 있는데,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공개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도 포함한다.(제20조 2항)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이 국내 법령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근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원의 판례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적법성과 관련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2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²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공개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2조(정의)

1. “공개된 정보”란 이용자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공개 대상이나 목적의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를 수집, 저장, 조합·분석 등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여야 한다.
2. 비식별화 조치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조합·분석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식별화 조치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정보 처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2.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3.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² 동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2016.7.1.자로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4조(공개된 정보의 수집·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공개된 정보의 수집 출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이용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의 목적
3.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제5조(이용내역정보의 수집·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이용내역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내역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³ 특히 공개된 개인정보와 이용내역정보의 처리가 문제가 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공개된 개인정보’ 나 ‘이용내역정보’를 달리 취급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몇 가지 예외 사유에 한정하여 동의 없는 수집을 허용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4조 등)은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정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제한없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다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거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해당되는 모든 정보주체가 그 수집에 필요한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공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³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4 의결 제16호(2014. 7. 30.).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관련 진정 건

우선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성과 관련하여 국내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등에 대한 결정⁴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즉,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SNS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해 올린 글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용자의 본인확인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트위터와 같은 해외 SNS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법원은 SNS 관련 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⁵, 법원은 트위터 정보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트위터 정보 전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트위터 정보의 양과 다양성, 각 트위터 정보의 분리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더하여 보고, 여기에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까지 고려하여 보면, 결국 트위터 정보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첫째, 트위터 사용자가 실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트윗이나 리트윗 글에는 사용자의 개인적 신념과 인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를 팔로워나 팔로잉 내역 등 다른 트위터 정보와 결합하면 사용자의 사회적 지위, 신분 등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셋째 수사기관이 특정 트위터 사용자의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실명, 전화번호 등 전형적 개인식별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결국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점, 넷째 위치정보,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3)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의 적법성 문제

⁴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⁵ 서울고등법원 2017.8.30 선고. 2015노1998 판결. 이는 이른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으로서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한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2017년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파기환송심 결과는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트위터 정보 수집의 적법성을 트위터 사용자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혹은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빅데이터사가 API를 통해 트위터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제공받아 수집, 보관한 것 자체는 어느모로 보나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트위터 사용자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는 트위터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 사용자 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 콘텐츠의 다양한 재사용을 권장 및 허용하며 트위터 API는 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 사용자의 공개 프로필 정보와 공개트윗은 API를 통해 트위터 사의 광범위한 사용자들과 서비스로 즉시 전달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들이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적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트위터 정보가 트위터 사에 의하여 빅데이터 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는 동의를 받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시행령 제12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트위터 사용자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트위터 정보가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보았는데, 2016년 8월 대법원 판결⁶을 인용하며 “트위터 약관에서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가 다른 트위터 이용자나 제3자 서비스 및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다양한 재사용을 위하여 트위터 사가 API 정보를 수집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트위터 사가 기존에 수집한 API 정보를 제3자인 빅데이터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앞서, 2016년 8월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본 바 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나와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20조에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⁶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후통제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가 어떻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하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판결도 있었다. 2016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⁷은 골프웨어의 판매자가 SNS에 게시된 이용자의 골프웨어를 입은 사진을 영업 목적으로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SNS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판매자가 SNS 사용자의 사진을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SNS 사용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3. 해외 사례

1)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DPR에서도 공개된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민감정보의 처리를 규정한 GDPR 9조 2항(e)는 정보주체가 명백히 공개한 개인정보의 경우, 해당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9조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⁷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1.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를 나타내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전자 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목적의 생체정보, 건강정보, 성생활 또는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의 처리는 금지된다.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e) 개인정보주체가 명백히 공개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처리인 경우⁸

유럽개인정보보호법 핸드북⁹에 따르면, GDPR에서 명백히 공개한 개인정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고의로(deliberately)' 공개한 개인정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방수가 불을 끄다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을 담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텔레비전이 방송했다면 이는 소방수가 공개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소방수 본인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영상을 올려놓았다면, 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민감정보 처리를 위한 별도의 허가라는 점이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하의 처리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목적 제한의 원칙 등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EU 법집행 지침¹⁰에 대한 29조 작업반의 의견서¹¹도 참조할 만하다. EU 법집행 지침 제10조(c)는 '개인정보주체가 명백히 공개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처리인 경우'에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9조 작업반은 이 조항은 "정보주체가 법집행 당국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도록 각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호할 경우에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경력, 언론, 웹사이트 등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의도가 명확하다. 그러나 SNS에 등록된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보에 수사기관이

⁸ (e) processing relates to personal data which are manifestly made public by the data subject;

⁹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2018 edition. pp 162-163

¹⁰ DIRECTIVE (EU) 2016/68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detection or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or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77/JHA

¹¹ WP29, Opinion on some key issues of the Law Enforcement Directive (EU 2016/680). 2017.11.29

접근가능 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29조 작업반은 이와 같은 자발적인 동의는 국내 법에 의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있을 경우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GDPR 제14조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와는 달리 개인정보처리자와 관련된 정보나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기본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의 출처, 가능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공개 출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부’(제14조 2항(f))¹²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제14조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GDPR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에 해당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거나 비례적으로 과도한 노력을 요하는 경우, 특히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학술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의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수, 데이터의 수명, 적절한 안전조치의 유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¹³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위에 한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a) 개인정보주체가 이미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b) 해당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거나 비례적으로 과도한 노력을 요하는 경우, 특히 제89조(1)의 조건 및 안전조치에 따른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학술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에 대해 그러한 경우. 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가 그 처리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고, 개인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취득 또는 제공을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

(d) 법정 기밀유지의 의무 등,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규제하는 직무상 기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가 기밀로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

한편, GDPR은 제17조에서 정보주체의 ‘삭제권(잊힐 권리)’을 보장하고 있는데, 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

¹² (f) from which source the personal data originate, and if applicable, whether it came from publicly accessible sources;

¹³ GDPR recital (62)

사본, 또는 복제본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을 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가용 기술과 시행 비용을 참작하여)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프라이버시법(Italian Personal Data Protection Code) 24조 (c)¹⁴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등록소, 목록, 문서,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공개된 목적에 양립가능한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SNS를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13년 ‘관측 활동 및 스팸으로 구성된 자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SNS의 사용자 정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업체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수신자 동의없이 스팸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¹⁵

3)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개인정보보호법 section 1의 (4)(b)도 법에 따라 일반 공중이 접근가능하도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¹⁶ 이 조항은 기업등록소(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렇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보처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자는 이 법의 의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section 2D (1)(b)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에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section 2(8)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에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¹⁴ 1. Consent shall not be required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art II as well as if the processing c) concerns data taken from public registers, lists, documents or records that are publicly available, without prejudice to the limitations and modalities laid down by laws, regulations and Community legislation with regard to their disclosure and publicity;

<http://www.privacy.it/archivio/privacode-en.html#sect24> (검색일 : 2018. 6. 17)

¹⁵ Maria Roberta Perugini, "PERSONAL DATA MADE PUBLIC BY THE 'DATA SUBJECT' AND USE OF INFORMATION PUBLISHED ON SOCIAL NETWORKS: EARLY OBSERVATIONS OF GDPR ART. 9, para. 2, letter e) [FIRST PART], 2016.10.31. <http://europrivacy.info/2016/10/31/italiano-dati-personali-resi-manifestamente-pubblici-dallinteressato-e-uso-di-dati-pubblicati-su-social-network-prime-osservazioni-allart-9-co-2-lett-e-gdp/> (검색일 : 2018. 6. 17)

¹⁶ <https://www.dataprotection.ie/docs/Data-Protection-Acts-1988-and-2003:-Informal-Consolidation/796.htm#1> (검색일 : 2018. 6. 17)

마케팅 혹은 웹사이트에 재공개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목적의 이용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다.¹⁷

4) EU-US 프라이버시 쉼드

EU-US 프라이버시 쉼드의 추가원칙(supplemental principles) 15조¹⁸는 공공기록 및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a)항은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소스의 개인정보 및 정부기관이 공공일반에 공개한 기록에 보안, 데이터 무결성, 목적 제한, 구제(recourse), 집행,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에는 고지, 선택, 추가이전을 위한 책임성 원칙이 적용될 필요는 없으며, (유럽의 양도인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에도 일반적으로 이 원칙들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 가입 단체들이 프라이버시 쉼드 원칙을 위반하여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했을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된다. (15(c))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나 공공기록은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결합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권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4. 결론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그 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든 이용되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상대방에게 명함을 주든,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공개하든, SNS에 글을 올리든 정보주체는 자신이 공개한 개인정보가 특정한 범위에서,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될 것임을 기대한다. 국내 법원도 공개된 개인정보 역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배제되지 않는 개인정보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해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보인다. 그러나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자는 그때부터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정보주체에게는 법에서 주어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수집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한 수집된 개인정보의 식별자를 삭제하는 등 최소수집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공개된 개인정보에도 목적제한의 원칙이 적용되어 애초에 공개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물론 그 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¹⁷ Ireland Data Protection Commission. Restrictions on the use of publicly available data for marketing purposes. <https://www.dataprotection.ie/docs/Restrictions-on-the-use-of-publicly-available-data-for-marketing-purposes/213.htm> (검색일 : 2018. 6. 17)

¹⁸ <https://www.privacyshield.gov/article?id=15-Public-Record-and-Publicly-Available-Information>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처리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그 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 목적의 처리를 그 자체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를 위법하다고 본 판례도 있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 외에 활용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결국은 구체적인 사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비식별 조치만 취하면, (해당 비식별조치가 '익명조치'가 아닌 한) 일률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0조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을 포함하여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가 사실상 권리를 보장받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GDPR 제14조와 같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나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같은 필요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